

서울고등법원 2023. 2. 9 선고 2022나20086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3. 2. 9 선고 2022나200862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0가합583341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김영태

피고, 항소인 사단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봉하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철기

변론종결 2022. 11. 24.

판결선고 2023. 2. 9.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0가합583341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5.

접수 제10976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고,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9면 제6 내지 8행의 “봉안당 설치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반환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삼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를 “봉안당 설치신고가 수리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반환을 요청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삼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1행의 “봉안당 설치허가를 요청하였다.”와 제14행의 “봉안당 설치허가신청을 하였다.”를 모두 “봉안당 설치신고를 하였다.”로, 제11행의 ”위 허가신청“과 제14, 15행의 ”위 신청“을 모두 ”위 신고“로, 마지막 행의 “봉안당 설치허가신청 과정”을 “봉안당 설치신고 및 그 반례 과정”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18행부터 제12면 제1행까지 “피고의 대표자인 F은 …… 표명하였다.”와 그

아래 글상자를 삭제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종교단체인 피고의 구성원이 되었으므로 그 증여계약 또는 종교단체 가입에 부가된 해제조건은 불법조건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해제조건이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마용주, 판사 임종효, 판사 주선아